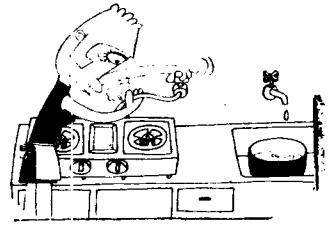


關係法令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1973. 2. 6 公布)
法律 第2482號

第1條(目的) 이 법은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을 豫防하고, 신속한 災害復舊와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을 하게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損害保險會社”라 함은 保險業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火災保險 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2.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이라 함은 火災로 인한 建物의 損害와 第4條 第1項에 規定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保險을 말한다.

3. “特殊建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 1에 該當하는 建物을 말한다.

가. 四層以上의 建物.

나. 國有建物·教育施設·百貨店·市場·醫療施設·興行場·宿泊業所·工場·共同住宅 其他 多數인이 出入 또는 勤務하거나 居住하는 建物로써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物.

第3條(適用地域) 이 법의 適用地域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條(建物所有者 損害賠償責任)

- ①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그 建物의 火災로 因하여 他人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때에는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第8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額의 範圍안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規定

에 不拘하고 特殊建物 所有者에게 輕過失이 있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② 特殊建物の 所有者의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는 이 법의 規定에 依하는 外에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保險加入義務) ①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의 履行을 爲하여 그 建物을 損害保險會社가 營爲하는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以下 “特約付火災保險”이라 한다)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從業員에 對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依한 産業災害補償保險에 加入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從業員에 對한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特別維持의 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特約付火災保險에 附加하여 風災·水災 또는 倒塌 등으로 인한 損害를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③ 損害保險會社는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의 締結을 拒絕하지 못한다.

④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그 建物が 竣工檢査에 合格된 날 또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 날로부터 30日內에 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⑤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前項의 特約付火災保險契約을 每年 更新하여야 한다.

第6條(外國人 등의 所有建物에 對한 特例) 特殊建物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建物에 對하여는 第4條 및 前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의 大使·公使 其他 이에 準하는 使節이 所有하는 建物.
2. 大韓民國에 派遣된 國際聯合의 機關 및 그 職員(外國人에 限한다)이 所有하는 建物.
3. 大韓民國에 駐屯하는 外國軍隊가 所有하는 建物.
4. 軍사용建物과 外國人所有 建物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物.

第7條(保險加入의 促進) ① 財務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의 加入義務者가 그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對하여 加入義務者에 對한 認·許可의 取消, 營業의 停止, 建物使用의 制限等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은 正當한 理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8條(保險金額) ①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加入하는 保險의 保險金額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火災保險은 特殊建物の 時價에 該當하는 金額.
 2.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中 死亡의 境遇에는 被害者 1人當 50萬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3.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中 負傷의 境遇에는 被害者 1人當 死亡者에 對한 保險金額의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 ② 前項 第1號에 規定한 時價의 決定에 關한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定한다.

第9條(保險金額의 請求)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이 發生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損害保險會社에 對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10條(押留의 禁止) 이 法에 依한 保險金請求權中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의 請求權은 이를 押留할 수 없다.

第11條(韓國火災保險協會의 設立) 損害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과 이에 關한 研究·啓蒙等을 그 業務로 하는 韓國火災保險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第12條(法人格) ① 協會는 社團法人으로 한다.

②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名稱使用의 制限) 이 法에 依한 協會가 다른 者는 韓國火災保險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14條(出捐) 損害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協會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出捐하여야 한다.

第15條(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
2. 火災保險에 있어서의 消火設備에 따른 料率割引等級의 査定.
3.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關한 資料의 調査·研究 및 啓蒙.
4. 行政機關 其他 關係기관에의 火災豫防에 關한 建議.
5. 其他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業務.

第16條(安全點檢) ① 協會는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 마다 當該 特殊建物の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協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特約付火災保險加入特殊建物에 對하여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할 수 있다.

③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正當한 理由가 없는 限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에 應하여야 한다.

④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에 不應한 때에는 協會는 消防官署의 長에게 그에 對한 安全點檢을 要請할 수 있다.

⑤ 協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을 할 경우에 어떠한 名目の 費用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17條(改善建議) 協會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結果,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그 防火施設의 改善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 줄것을 建議하여야 한다.

第18條(消火器機의 寄贈 等) ① 協會는 事業年度마다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行政機關 其他 關係機關에 消火器機를 寄贈하거나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消火設備 改良에 必要한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② 損害保險會社 또는 協會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消火器機의 製造工場을 設立하거나 消火器機를 製造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第19條(業務計劃) ① 協會는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該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財務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業務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0條(任員) ① 協會는 그 任員을 選任하거나 改善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協會의 常務에 從事하는 任員이 다른 業務에 從事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財務部長官은 協會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解任을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에 依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4.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5. 心身の 障礙로 因하여 職務遂行이 困難하게 된 때.

第21條(監督) ① 財務部長官은 協會의 效率의인 運營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協會의 定款 또는 業務方法의 變更을 命하거나 監督上 必要한 命을 할 수 있다.

② 內務部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協會의 業務中 同條 第1號 및 第3號의 業務에 關하여 監督上 必要한 命을 할 수 있다.

第22條(報告와 檢査) ① 財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定期 또는 隨時로 協會에 對하여 그 業務에 關한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協會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其他 必要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內務部長官이 第15條 第1號 및 第3號의 協會의 業務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도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視하는 證標를 關係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3條(罰則)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24條(同前)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25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② 이 法 施行當時 第5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特殊建物의 所有者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974年 6月 30日사이에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加入期限이 到來하는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1974年 6月 30日까지 이 法에 依한 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③ (同前) 이 法 施行當時 第2條 第1號에 該當하는 損害保險會社는 1973年 6月 30日 까지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協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施行令

(1973. 5. 11)
(大統領令 第6670號)

第1條(目的) 이 令은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以下 "法"이라 한다)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 目的으로 한다.

第2條(特殊建物) ① 法 第2條 第3號 나디 規定에 依한 建物は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建物로

한다.

1. 國有財産法 第3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한 不動産 中 延面積이 1,000平方「미터」以上인 建物.

다만 大統領官邸와 特殊用途에 供하는 建物로서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建物を 除外한다.

2. 私設講習場에 關한 法律 第2條에 規定한 私設講習所로 使用하는 部門의 延面積이 330平方「미터」以上인 建物.

3.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規定한 綜合病院 또는 病院으로 使用하는 建物.

4. 宿泊業法 第2條 第2項에 規定한 호텔로 使用하는 建物.

5. 公演法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公演場으로 使用하는 建物.

6. 映畫 또는 텔레비전 撮影所로 使用하는 建物 및 放送施設場으로 使用하는 建物.

7. 屋內販賣場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000平方「미터」以上인 建物.

8. 市場法 第2條 第3號에 規定한 市場으로 使用하는 建物.

9. 地方稅法 施行令 第103條에 規定한 料理店・舞蹈場・「카바레」 또는 「바」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330平方「미터」以上인 建物.

10. 教育法 第81條에 規定한 學校 建物. 다만 社團法人 學校 災害復舊 共濟會에 加入한 것을 除外한다.

11. 家口數 10以上の 것으로서 延面積이 1,000平方「미터」以上인 共同住宅建物.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指定하는 市民共同住宅을 除外한다.

② 法 第2條 第3號 가의 規定에 依한 4層以上建物の 層數計算方法은 建築法施行令 第6條 第1項 第7號의 規定에 依하되 地下層은 이를 層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3條(適用地域) 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法の 適用地域은 서울 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로 한다.

第4條(特例) 法 第6條 第4號의 規定에 依한 軍用建物は 國防部長官 및 兵務廳長이 管理하는 建物로서 다음 各號에 揭記한 것 以外의 建物を 말한다.

1. 國防部長官이 指定하는 3層以上의 建物.
2. 國軍統合病院의 診療部와 病棟建物.
3. 軍人共同住宅.

第5條(保險金額) ① 法 第8條 第1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額은 다음과 같다.

1. 死亡의 境遇에는 50萬원.
2. 負傷의 境遇에는 別表에서 定하는 金額. 다만 支給保險金은 實損害額을 超過할 수 없다.

②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依한 實損害額의 範圍는 財務部令으로 定한다.

③ 負傷者가 治療 中에 死亡한 境遇에는 第1項 第1號 및 第2條의 保險金을 함께 支給한다.

第6條(保險金 支給請求 節次) ① 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請求書를 損害保險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1. 請求者의 住所 및 姓名.
2. 死亡者에 對한 請求에 있어서 是 請求書와 死亡者와의 關係.
3. 被害者와 保險契約者의 住所

및 姓名.

4. 事故發生 日時, 場所 및 그 概要.

5. 請求하는 金額과 그 算出基礎.

② 第1項의 請求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診斷書 또는 檢案書.
2. 第1項 第2號 乃至 第4號의 事項을 證明하는 書類.
3. 第1項 第5號의 算出基礎에 關한 證憑書類.

第7條(保險金 支給에 對한 意見聽取) 損害保險會社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을 支給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契約者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第8條(保險金 支給) ① 損害保險會社는 保險金의 支給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遲滯없이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

② 損害保險會社는 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을 支給한 때에는 遲滯없이 다음 各號의 事項을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保險金의 支給請求者와 受領者의 住所 및 姓名.
2. 請求額과 支給額.
3. 被害者의 住所 및 姓名.

第9條(設立許可申請) 損害保險會社가 法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火災保險協會(以下 “協會”라 한다)의 設立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許可申請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定款.
2. 事業方法書.
3. 創立總會 議事錄.

第10條(協會費의 出損 等) ① 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保險

會社가 出捐하여야 할 費用(以下 “協會費”라 한다)은 火災保險料 收入의 100分의 7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災保險料 收入의 算出方法과 協會費의 出捐方法 및 出捐時期에 關하여는 財務部令으로 定한다.

③ 協會는 그 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損害保險會社에 對하여 協會費의 前渡를 要請할 수 있다.

④ 協會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協會費의 前渡를 받은 때에는 當該年度內에 이를 精算하여야 한다.

第11條(資金의 借入) 協會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12條(安全點檢) ① 協會는 法第1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48時間前에 이를 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者は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標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者は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標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者は 安全點檢을 함에 있어서 關係人의 業務를 妨害하거나 知得한 秘密을 他人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

은 關係人의 承諾없이 出前, 日沒前에 이를 實施할 수 없다.

⑥ 協會는 法 第1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한 때에는 10日內에 그 結果를 管轄 消防官署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 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損害保險會社가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協會에 出捐하는 初年度 協會費는 1973年 5月 1일부터 1973年 12月 31日까지의 火災保險料 收入의 100分의 7로 한다.

傷害區分 및 保險金額

| 傷害保險級別 | 金額 | 傷 害 部 位 |
|--------|------|--------------------------------------------------------------------------------------------------------------------------------------------------------------------------------------------------------------------------------------------------------------------------------------------------------------------------------------------------------------------------------------------------------------------------------------------------------------------------------------------------------------------------------|
| 1級 | 40萬圓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股關節骨折 또는 骨折性脫臼. 2. 脊椎體粉碎性骨折. 3. 脊椎體骨折 또는 脫臼로 인한 諸 神經症狀으로 手術이 不可避한 傷害. 4. 外傷性頭蓋腔內出血로 開頭術이 不可避한 傷害. 5. 頭蓋骨의 陷沒骨折로 神經學的 症狀이 甚한 傷害. 6. 腦腫脹과 乳頭腫脹이 甚하거나 其他의 頭腦損傷으로 生命이 危篤한 傷害. 다만 損害保險會社가 指定하는 3人以上의 專門醫師의 診斷이 있어야 한다. 7. 大腿骨幹部의 粉碎性骨折. 8. 頸骨下 3分之1部 粉碎性骨折. 9. 3度火傷 等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9「퍼센트」以上인 傷害. 10. 4肢와 軀幹部에 軟部組織損傷이 甚해 有莖植皮術이 不可避한 傷害. 11. 其他 1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 |
| 2級 | 35萬圓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上膊骨 幹部粉碎性骨折. 2. 脊椎體의 楔狀壓迫骨折이 있으나 諸 神經症狀이 없는 傷害. |
| 3級 | 30萬圓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頭蓋骨骨折折로 神經學的 症狀이 顯著한 傷害. 4. 內部臟器破裂과 骨盤骨折이 同伴된 傷害. 5. 膝關節脫臼. 6. 足骨幹部骨折과 骨折性脫臼가 同伴된 傷害. 7. 尺骨幹部骨折과 橈骨骨頭脫臼가 同伴된 傷害. 8. 仙腸骨間開折脫臼. 9. 其他 2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 1. 上膊骨 頸部骨折. 2. 上膊骨頸部骨折과 肘關節脫臼가 同伴된 傷害. 3. 橈骨과 尺骨의 幹部骨折이 同伴된 骨折傷害. 4. 手根舟狀骨骨折. 5. 橈骨神經損傷을 同伴한 上膊骨幹部骨折. 6. 大腿骨幹部骨折. 7. 膝蓋骨의 粉碎性骨折과 脫臼로 인해 膝蓋骨完全摘出術이 適應되는 傷害. 8. 脛骨類部骨折이 關節面을 侵犯하는 傷害. |

9. 足根骨足趾骨間關節脫臼의 骨折이 同
伴된 傷害.
10. 前後十字靱帶나 內外側半月狀軟骨破
裂과 脛骨棘骨折 등이 複合된 膝關節
內障.
11. 腹部內臟破裂로 手術이 不可避한 傷
害.
12. 腦損傷으로 腦神經痲痺를 同伴한 傷
害.
13. 腦腫脹과 乳頭腫脹이 있고 神經學的
症狀이 甚한 傷害. 다만 損害保險會社
가 指定하는 3人 以上の 專門醫師의 診
斷이 있어야 한다.
14. 其他 3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

4 級 25萬圓

1. 大腿骨頸部骨折.
2. 脛骨幹部骨折.
3. 胛骨頸部骨折.
4. 膝蓋靱帶破裂.
5. 肩甲關節部の 回旋筋蓋破裂.
6. 上膊骨外側上顆轉位骨折.
7. 肘關節部骨折과 脫臼가 同伴된 傷害.
8. 3度火傷 等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4.5「퍼센트」以上인 傷害.
9. 其他 4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

5 級 21萬圓

1. 骨盤骨의 重複骨折(「말가이그너」氏
骨折 等).
2. 足關節部の 內外顆骨折이 同伴된 傷害.
3. 膝關節部の 內側 또는 外側副靱帶破
裂.
4. 足踵骨骨折.
5. 上膊骨幹部骨折.
6. 橈骨遠位部骨折.
7. 尺骨近位部骨折.
8. 多發性肋骨骨折로 血胸 또는 氣胸이
同伴된 傷害.
9. 手掌部筋腱破裂創.
10. 「아카레스」腱破裂.
11. 2度火傷 等の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9「퍼센트」以上인 傷害.
12. 其他 5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

6 級 18萬圓

1. 小兒의 下肢長管骨幹部骨折.
2. 大腿骨大轉子片骨折.
3. 大腿骨小轉子部切片骨折.

4. 多發性中足骨骨折.
5. 恥骨 挫傷 腸骨의 單一骨折.
6. 單純膝蓋骨骨折.
7. 橈骨幹部骨折(遠位部骨折을 除外한다)
8. 尺骨幹部骨折(近位部骨折을 除外한다)
9. 尺骨肘頭骨折.
10. 多發性中手骨骨折.
11. 頭蓋骨骨折로 神經學的症狀이 輕한
傷害.
12. 外傷性蜘蛛 膜下出血.
13. 腦挫傷으로 神經學的症狀이 甚한 傷
害.
14. 其他 6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

7 級 15萬圓

1. 小兒의 上肢長管骨幹部骨折.
2. 足關節內顆骨 또는 外顆骨骨折.
3. 上膊骨上顆部屈曲骨折.
4. 股關節脫臼.
5. 肩甲關節脫臼.
6. 肩峰鎖骨間關節部脫臼.
7. 2度火傷 等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4.5「퍼센트」以上인 傷害.
8. 其他 7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

8 級 12萬圓

1. 上膊骨上顆部伸與骨折.
2. 鎖骨骨折.
3. 肘關節脫臼.
4. 肩甲骨骨折.
5. 肘關節內上膊骨小頭骨折.
6. 腓骨骨折.
7. 足趾骨의 骨折과 脫臼가 同伴된 傷害.
8. 多發性 肋骨骨折. ●
9. 腦挫傷으로 神經學的症狀이 輕한 傷害.
10. 下顎骨骨折.
11. 其他 8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

9 級 9 萬圓

1. 脊椎骨의 棘狀突起 또는 橫突起骨折.
2. 橈骨骨頭骨折.
3. 腕關節內 月狀骨前方脫臼 等 手根骨脫
臼.
4. 手脂骨의 骨折과 脫臼가 同伴된 傷害.
5. 中手骨骨折.
6. 手根骨骨折(舟狀骨은 除外한다.)
7. 足根骨骨折(距骨 踵骨은 除外한다.)
8. 中足骨骨折.
9. 足足節部捻挫.

10. 肋骨骨折.
11. 脊椎體間關節部 捻挫와 周圍軟部組織 (靱帶筋肉 等)損傷이 同伴된 傷害.
12. 外傷性膝關節內 血腫.
13. 中手骨 指骨間關節脫臼.
14. 手根骨中手骨間關節脫臼
15. 腕關節部 捻挫.
16. 諸 不完全骨折(鼻骨, 手指骨, 足趾骨을 除外한다.)
17. 其他 9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

10級 7 萬원

1. 足趾骨關節脫臼 및 捻挫.
2. 手指關節脫臼 및 捻挫.
3. 鼻骨(코)骨折.
4. 手指骨骨折.
5. 足趾骨骨折.
6. 腦震盪.
7. 其他 9日 乃至 14日間の 入院을 要하는 傷害.

11級 4 萬원

4日 乃至 8日間の 入院을 要하는 傷害.

12級 2 萬원

3日 以下の 入院을 要하는 傷害.

參 考

1. 2級 乃至 10級까지의 傷病名中 開放性骨折는 該當 等級보다 1級 높이 補償한다.
2. 2級 乃至 10級까지의 傷病名中

單純性線狀骨折로 骨片의 轉位가 없는 骨折의 境遇에는 該當 等級보다 1級 낮게 補償한다.

3. 2級 乃至 10級까지의 傷病名中 2가지 以上の 傷害가 重復된 때에는 가장 높은 等級에 該當하는

傷害로부터 下位 3等級(例: 2級이 主症일 때에는 5級까지 사이) 사이의 傷害가 重復된 때에 限하여 1級 높이 補償한다.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1973年 6月 6日 財務部令 956號)

第1條(目的) 이 令은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의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細部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實損害額)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施行令(이하 “令”이라 한다)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損害額은 火災로 因하여 身體上에 傷害를 입은 경우에 그 傷害를 治療함에 소요되는 모든 費用으로 한다.

第3條(火災保險料 算出方法) 令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火災

保險料는 一般火災 保險料의 原受保險料와 長期火災保險 및 家計綜合保險의 原受保險料중 火災危險保險料로 한다.

第4條(出捐時期) 令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費는 每月 當月分을 翌翌 月末日까지 出捐하여야 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